

古代中國에 있어서의 國際法

諸 成 鎬*

東洋 3國 즉 韓國·日本 그리고 中國의 國際法 受容過程은 근자에 國際法史 및 法史學 등의 分野에서 關心과 興味를 끄는 重要한 研究課題로서 부각되고 있다. 이것은 西歐基督教文化圈의 基盤위에서 生成·發展해 온 歐洲公法 내지 近代國際法이, 이러한 背景下에서 이들 國家들에게 外部的 衝擊으로서 作用하였으며 또한 이 國際法에 대한 그들의 反應은 어떠한가를 考察對象으로 한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理解하고 있는 國際法——그것은 前述한 바와 같이 近代國家體制를 基盤으로 한 西歐基督教文明의 歷史的 產物이다——라는 多少 明白한 東洋의 國際法, 특히 古代中國이라는 土壤에서 싹이 트고 자라난 國際法이 과연 全無하였을까 하는 의구심이 솟아나게 된다. 일찌기 古代中國에도 國際法이라 할 수 있는 것이 存在하였을 것이라는 着想은 William Alexander Parsons Martin(1827-1916, 中國名 丁韞良)에 의하여 提起되었다. 美國의 宣教師인 Martin은 1862年 中國의 外交官 養成을 위해 北京에 同文館이 設置되었을 때 國際法教授로서 參加한 적이 있으며, 그는 거기에서 Henry Wheaton의 *Elements of International Law*를 漢譯한 바 있다. 이것은 中國國際法の 最初의 著作이며 또한 「萬國公法」이라 하여 東洋에 최초로 紹介된 西洋 國際法書로서 잘 알려져 있다. 이외에도 Martin은 Theodor D. Woolsey의 *Introduction to the Study of International Law*를 「公法使覽」으로, 또 Bluntschli의 *Das moderne Völkerrecht der civilisierten Staaten als Rechtsbuch dargestellt*를 「公法會通」으로 漢譯하였는데 이 세 漢譯 國체법서는 즉시 日本에도 수입되어 日本語로 번역 또는 漢譯書 그대로 出版되어 日本의 近代國際法學의 礎石을 形成하게 되었다. 이들 國際法書는 우리나라에도 중국에서부터 직접 수입되었으리라 추측되는데 精確한 年代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그 가운데서 특히 「萬國公法」은 1886년 9월에 개설했던 育英公院의 教科書로 使用되었으며 「公法會通」은 1896년 9월 5일 學部에서 출판되었는데 이것은 우리나라에서 서양법률사적으로는 최초의 출판물로 간주되고 있다. (Martin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崔鍾厚 著, 「韓國의 西洋法受容史」 博英社, 1982. 특히 23-25面 참조).

國際法史의 興味로운 한 部分으로서 古代中國에 있어서 國際法이라고 할 만한 法規範이 形成되어 있던가에 대한 疑問은 다음에 소개할 Martin의 *The Lore of Cathay*(1912) 中の 第22章 “International Law in Ancient China”에서 많은 해답을 求할 수 있을 것이다. (以下翻譯에서 脚註는 省略했다)

中國이 西歐의 國家들과 보다 密接한 關係, 특히 常駐使節을 통한 相互交涉을 갖게한 條約들 때문에 中國의 政治家들은 國際法에 關心을 기울이게 되었다.

그들에게 있어서 國際法은 後述하는 바와 같이 고대 중국에도 일종의 國체법에 해당하는 것이 있기는 하였지만, 國際法은 過去 2千年동안 中國인의 祖上들이 한번도 가져보지 못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概念들을 포함한 것이므로, 그들에게는 새로운 研究對象이다.

그들의 近代史는 기원전 2세기부터 시작되었는데, 本研究의 目的上 3期로 區分될 수 있

* 서울大學校 法學研究所 助教

을 것이다. 第1期는 포에니戰爭(the Punic Wars)에서부터 始作하여 希望峰을 거쳐 印度로 가는 航路를 發見할 때까지이며, 第2期는 制限된 通商이 許容되었던 三世紀 半에 걸친 期間이다. 그리고 第3期는 1839년의 所謂 “아편戰爭”(Opium War)에서 始作하여 條約關係를 가졌던 60年을 包含한다.

第1期の 中國人들은 마치 그들이 다른 혹성에 속해 있었던 것처럼, 西洋世界를 뒤흔들었던 激動의 影響을 거의 받지 않았다. 第2期에 그들은 近代유럽의 主要한 國家들의 存在를 認識하기 始作하였다. 그러나, 그들에게 전해진 知識은 멀리 떨어진 國家의 雄大함과 重要性을 일깨우기에는 아직 充分하지 못하였다. 第3期에는 수에즈運河의 開通과 시베리아橫斷鐵道의 建設은 中國人들로 하여금 可恐할 만한 隣接國家들과 危險스러운 만큼 近接해 있음을 깨닫게 하였다. 중국은 갈수록 치열해진 戰爭을 5번 치룬 이후에야 비로소 서양과 전면 對決하게 되었지만 이러한 不愉快한 經驗은 그들로 하여금 西洋國家들의 軍事力을 잘 알게끔 하였다.

바로 이러한 것이 中國이 朝貢國(tributaries)으로 分類해 왔던 國家들과 平等의 原則에 立脚한 交渉을 容認하게 된 300년간의 過程이다.

中國의 朝貢國은 東아시아의 小國들을 包含하였다. 한편으로는 文字 및 宗教의 共有와 다른 한편으로는 通商의 利益 때문에, 그러나 아마 이 보다는 大國으로서의 中國의 偉大性이란 精神의 影響 때문에 이러한 小國들은 로마제국처럼 방대한 영역을 지배하였던 中國에게 自發적으로 尊敬을 바쳤다. 그래서 中國은 orbis terrarum (世界)에 相當하는 용어를 항상 自稱하였다. 이러한 朝貢國들은 相互間에 거의 關係를 갖지 않았으며, 또한 中國이 그들과의 交渉에서 相互主義(reciprocity)를 認定하지 않았기 때문에 中國이 이 關係에서 平等한 權利를 享有하는 國際社會(a community of nations)라는 概念을 배웠으리라고는 期待할 수 없다.

2천년 동안 中國은 그들의 國民 뿐 아니라 그에 從屬하는 隣接國家들에게 까지 競爭相對가 없는 웅장한 제국의 面貌를 보여주었고, 이러한 帝國의 統一은 일시적인 革命이나 無政府狀態에 의해서만 斷絶되었을 뿐이었다. 이 長久한 期間동안 中國에 있어서 國際法規가 生成될 可能性이 없었음은 로마帝國이 아직까지 解體되지 않고 存續할 境遇 유럽에서 그러한 일이 나타날 可能性이 극히 적은 것과 마찬가지로, 즉 國際法規의 生成에 必要한 條件이 缺如되어 있었다. 그러한 條件이 存在하는 곳에서는 慣例(usage)에 立脚한 다소간의 發達된 法規가 人間의 必要性에 의해 생기니기 마련이다. 이러한 條件들이란 첫째, 友好的인 相互交渉의 維持를 要求하거나, 選好할 수 있도록 位置한 獨立國家群이 存在할 것 둘째, 그러한 國家들이 平等을 基礎로 하여 交渉을 영위할 수 있을 만큼 關聯을 맺을 것 등이다.

비록 統一帝國下에서 이러한 條件들이 현저하게 缺如되었다 하더라도 國際法規의 發達에 유리한 모든 狀況을 隨伴했던 前時期에는 그 條件들이 분명히 존재하였다.

그 當時 中國本土의 광대한 領域은 수많은 獨立的인 諸侯國(independent principalities)들로 分裂되어 있었지만, 그 人民들은 한 羈絆이며 이미 相當히 發達된 동일한 文明을 共有하고 있었을 뿐 아니라 共通의 言語라는 紐帶로 結束되어 있었다.

이러한 條件들은 古代그리스에서도 同一하였는데 그 結果 初步의인 法規가 나타났으며 이것은 歐洲國家들의 “協調體制”(“concert” of European Powers)와 비견할 만한 國際紛爭의 解決制度인 隣保同盟會議(the Amphictyonic Council)로까지 발전하였다.

古代中國에 있어서도 事情은 이와 拾似하였으나 그 活動의 폭이 훨씬 더 廣範圍하였다. 더욱기 기기에는 重要的 差異點이 또 하나 있었다. 즉, 中國의 國家들은 古代 그리스와는 달리, 洗鍊된 政治的 關係가 없이 原始狀態에서 出現한 獨立種族의 集合이 아니라는 것이다. 近代유럽諸國이 로마帝國의 그것을 繼承한 것과 같이 그들은 瓦解된 帝國의 法과 文明을 물려받으면서 기기 割據한 존재이다.

이러한 國家들이 興亡盛衰하였던 期間은 周(Chou)王朝의 後半期였다. 이것은 西洋에 있어서는 Solon의 出生에서부터 Alexander의 死後 第1世紀末葉에 이르는 期間에 대체로 該當하는데, 이 時期는 그리스와 마찬가지로 中國에서는 政治的 激動의 時代였다. 帝國의 通常의인 統治形態는 封建制度였는데, 이러한 封建制度의 原型은 1868年の 改革(明治維新을 말함: 譯者註)에 의해서 사라지기 前까지 日本에서 盛行하였다. 周王朝의 創建者가 領土를 自發的으로 分割함으로써 여러 國家가 誕生하게 되었는데, 周의 創建者는 샤르마뉴(Charlemagne) 大帝와 같이 이 조처 때문에 그의 領土內에 破滅의 씨를 뿌린 셈이다.

이들 各國의 君權은 세습되었으며, 따라서 獨立意識이 곧이어 나타나기 始作하였다. 周王들은 처음에는 武力으로 秩序를 維持할 수 있었다. 그리고 심지어 그들이 權力을 喪失하였을 때에도 마치 中世의 로마敎皇의 그것과 같이 王廷은 오랜동안 계속 國際紛爭의 調整을 위한 呼訴場으로서 機能하였다. 그러나 결국 모든 權威를 喪失함에 따라 封建諸侯들은 外觀上의 服從을 버리고 아무 거리낌 없이 個人的 야심을 追求하게 되었다. 이 時代를 中國의 史家들은 ‘戰國’時代라고 부르며, 秩序있고 平和로운 交涉의 特徵인 先行時代는 ‘列國’時代라고 한다.

그와 같은 活動舞臺와 先例를 갖고 있는 國際社會(a family of states)는 戰爭과 平和가 交叉하는 가운데서 그들에게 國際法體系로서 看做할 수 있는 일련의 慣例體系를 發展시키게 마련이다.

따라서 만약 우리가 그러한 고유한 體系를 찾기 위하여 그 時代의 歷史에 눈길을 돌린다면, 그 體系自體는 아닐지라도 그러한 體系가 存在했었다는 證據는 찾을 수 있을 것이다. 前述한 바와 같이 우리는 하나의 國際社會를 發見하게 되는데 그들 中에는 西歐의 列強만큼 큰 나라도 많이 있었지만 그것은 人種, 文學 및 宗教의 유대로 結束되어 있었고 상업 및 政治적인 활발한 접촉을 갖고 있었다. 이런 것은 어느 정도 인정된 萬民法가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이었을 것이다. 또 세련된 文明을 시사하는 儀禮形式으로 使臣이 서로 왕래하였다. 條約은 엄숙히 締結되었고 그 遵行을 보증하기 위해 조약문서는 盟府라는 聖所에 보관되었다. 强者의 侵略을 抑制하고 弱者의 權利를 保護하는 이종의 목적을 위한 勢力均衡도 연구되었을 뿐 아니라 실행되기도 하였다. 中立國의 權利도 어느 程度 認定되고 尊重되었다. 마지막으로 지적할 수 있는 것은 사실 그들의 外交가 Machiavelli 時代에 이태리의 諸國間에 이루어졌던 外交와 大差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職業的으로 外交에만 종사하는 階層이 존재하였다는 사실이다.

數世紀동안 이처럼 複雜한 交涉을 規制해 온 規則을 제대로 수록한 책은 현재 傳히는 것이 없다. 만약 그러한 著述이 存在했었다 할지라도 그것은 아마도 萬里長城을 건설할 堦의 기억을 무시부시하게 만든 “焚書”의 事件에 消失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가 想定했던 마 그러한 國際法規의 片鱗은 그 時代의 文獻——孔子와 孟子를 비롯하여 기원전 500년동안 활약한 다른 哲學者의 著述 및 여러가지 歷史記錄, 그리고 특히 周禮——에 散在되어 있다.

뛰어난 和蘭人 그로티우스가 그리스와 이태리의 國際慣例를 추적하였듯이 언젠가는 中國學者 중에서도 이와 같은 斷片的인 흔적을 수집할 날이 있을 것이다. 中國著書에서 이 問題에 관한 귀절들을 部分的이나 수집하는 것은 本章의 考察範圍를 넘게 될 것이다. 필자는 이상에서처럼 古代中國의 國家들 間에 特有한 慣習法體系가 存在했음을 指摘하고 아울러 이러한 見解를 證明하는 몇가지 事實을 引用하고, 필자가 언급한 것보다 더욱 興味로운 몇가지 주제들에 약간의 關心을 表明하는데 그치고자 한다.

이러한 國家들이 獨立的인 後에 承認한 公法에 대한 가장 明確한 見解는 疑心할 바 없이 共通의 宗主國에 服從하면서 그들 相互間에 맺고 있는 關係속에서 찾을 수 있다.

強大國의 數는 12個國이었는데, 그들間의 領土의 分配는 數世紀동안 天體의 秩序와 마찬가지로 恒久的인 것으로 여겨졌다. 그것은 그 當時의 天文學에 의해 神聖化되었는데, 古代의 天體圖에 의하면 天體는 12部分으로 나뉘어져 있고 各部分에 할당된 별은 그에 相應하는 帝國의 一定地域의 運命을 管掌하게 되어 있다. 또한 12個 強大國의 이름은 1320年頃 蒙古王朝下에서 만들어진 方位表示器機의 水平 눈금에도 새겨져 있음을 볼 수 있는데 이 기구는 지금까지 北京觀測所에 保存되어 있다. 이러한 領土分割과 關聯된 感情의 깊이를 例示하는 데는, 그것을 不變의 天體와 聯關시킨 紀念物이 그 국가들이 모두 소멸한지 15世紀 後에 天文機構를 建設할 때도 再生되었다는 事實보다 더 좋은 例는 없을 것이다.

孔子는 皇帝 또는 賢者——이 단어들은 二重의 意味를 갖는다——를, 다른 모든 星座들이 그것을 둘러싸고 回轉하는데 비해, 그 중앙에 위치하여 움직이지 않는 북극성에 비유하고 있는 아름다운 文句에서 이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 같다. 여러 國家의 領土權을 宗教의 保護下에 두기 위해서 이처럼 地理學과 占星學을 結合시킨 것 만큼 더 效果的인 方法이 또

있었는가? 國境을 特別한 神의 保護下에 두었던 로마의 方法보다도 이 方法은 더욱 生感한 것이며 아마 效果도 더 컸을 것이며 본래 不安定한 體制의 均衡을 기하는 데 적지 않게 寄與하였다. 같은 기간에 유럽에서는 마블론, 페르샤 및 그리스 帝國들이 발흥했다가 몰락하였지만 결국 大部分의 小國들은 完全히 消滅하는 結果로 끝났다.

이러한 12個의 大國들은 自己에게 依存하는 小規模의 수많은 附庸國을 갖고 있었는데, 그 全體는 “神聖로마帝國”(“Holy Roman Empire”)의 支配下의 獨逸에서 存在했던 것과 같이 多樣하고 複雜한 하나의 政治組織을 形成하였다. 中世유럽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이들 國家의 首長들은 公爵, 侯爵, 伯爵, 子爵 및 男爵에 該當하는 다섯 개의 序列로 等級이 매겨져 있었으며, 下位階級은 上位階級에 依存하기는 하였으나, 이들은 모두 公共善을 위하여 모든 祭후들의 命을 命할 權利를 갖는 天子에게 충성을 바쳤다. 天子는 그러한 일찍부터 왕에게 사용된 칭호였다. 魯의 年代記(즉 春秋를 말함: 譯者註)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흥미로운 명단을 발견할 수 있다. “[僖公] 9年 公은 葵丘(Kuei Chiu)에서 周公, 齊侯, 宋子, 衛侯, 鄭伯, 許男 및 曹伯을 會同하였다”.

우리는 여기서 5가지 序列의 존재를 目睹하게 된다. 左傳(또는 左氏春秋: 譯者註 the commentary of Tso)에 의하면 공인된 慣例에 따라 同盟을 結成하고 友好를 增進하는 것이 이 會議의 目的이었다고 한다.

여기에서 말하는 공인된 慣例은 그 當時의 國際法의 基礎를 形成하였다. 그 관례들은 紀元前 1100년경에 周王朝가 간행한 周禮에 部分的으로 收錄되어 있었으며 다소 毀損된 形態이긴 하지만 오늘날까지 전해지고 있다. 이러한 法規는 貴族의 席次를 규정하고 개개인에 대하여 심지어 埋葬儀式까지 포함된 소비생활을 規定하고 있으며, 또한 公共祭祀에 있어서 개개인의 役割 및 모든 公的 會議에서 遵守해야 할 禮節도 規定하고 있다. 또 그것은 行政 및 軍隊의 位階秩序와 그들의 機能을 詳細하게 說明하고, 度量衡 및 收稅와 刑罰의 方法을 定하고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은 무상무진한 細部的인 儀式과 뒤섞여 있어서 우리에게는 번거롭게 보일 수 있지만, 확실히 儀式主義的인 모세의 律法이 히브리人들에게 그러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古代中國사람들의 성격에 잘 맞는 것이었다.

이 法規는 一次的으로 王室에 隶属한 臣民에 대한 義務의 規定이었지만, 二次的으로는 그 帝國의 모든 諸侯들을 拘束하였다. 그들은 그 法規의 세세한 항목까지도 採擇하였는데, 단 北西쪽에 위치한 秦나라만은 例外였다. 秦나라는 前王朝인 商의 儀式과 禮節을 執拗하게 固守하면서 이질적인 氣風을 키웠고 그 결과 눈에 보이지 않는 敵國이 되어 結局에는 周室을 滅亡시켰다.

秦나라의 例를 除外하고는 여러 國家의 法律과 慣例들이 相當히 統一的이었기 때문에—— 이들은 모두 하나의 共通된 典型(model)에서 模倣한 것이다—— 國際法學의 諸分野中에서 오늘날 “抵觸法”(“conflict of laws”)이라는 名稱으로 매우 有名해진 分野가 발전할 機會란

거의 없었다.

封建制度에서 緣由한 思想은 이러한 복잡다단한 法律과 구석구석 뒤엉켜 있었기 때문에 그것의 一般的인 受容은 結局 王室權威의 대들보가 되었다.

강대국의 군주들은 中國의 近代諸侯들 못지 않게 獨立的이었지만 스스로 自處하였고 그들과 마찬가지로 5年이나 10년에 한 번씩 儀禮的인 충칭을 표시하였다. 따라서 그들은 王을 모든 영광의 根源으로서, 그리고 權利의 問題만 아니라면 모든 禮式問題에 最高의 權威로 尊敬하였다.

中世의 거의 모든 基督教君主들이 로마教皇에게 가까이 바친 尊敬과 더할 나위 없이 對比될 수 있는, 이러한 도덕적 권위(moral ascendancy)에 관해서는 國語에서 훌륭한 例를 찾을 수 있다. 襄王은 紀元前 651년에 國內의 叛亂에 의하여 그의 領土에서 ——이는 近年에 이태리王國에 合併된 로마教皇領과 비교할 수 있는 王國中央의 조그만 地域이었다—— 逐出되었는데, 그는 晉文公의 武力干涉에 의해서 王權을 回復하게 되었다. 이러한 奉仕에 대한 補償으로서 王은 그에게 土地를 下賜하였다. 晉公은 이를 拒絕하고 그 代身 王室의 장엄한 墳墓를 본받 무덤을 만들 수 있도록 許容해주시기를 要請하였다. 王은 분명히 온건한 이 要請을 危險한 僭越로 看做하여 拒絕하였으며, 따라서 晉公은 公認된 禮法(Code of Rites)을 遵守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共通된 宗主國의 意思에서 유래한 이러한 共通의 法規를 가지고 있었다는 事實은 비록 그들이 때로는 不和하거나 싸우기도 하였지만, 거의 1000여년간 가까이 중국국가들 사이에 강렬한 연대감을 유지하는데 寄與하였다. 이것은 같은 文化圈내에 속하지 않는 다른 國家들에 대해서 그들이 보여 주었던 感情과는 매우 대조적이다. 예를 들면 북서쪽의 夷狄(Tartars)이 晉나라의 궁전에 나타나서 平和友好條約의 체결을 要請하고, 겸손하게도 문화가 진보한 강대국의 封臣으로 대우해 달라고 제의했을 때, 晉의 君主는 그들이 友好에 관해서 무엇을 아느냐고 憤慨하면서 그들을 야만인이라고 부르고 우리와는 처음부터 敵일 수 밖에 없는 敵에게 합당한 戰爭을 할 것이라고 宣稱하였다. 晉나라의 大臣이 평화정책이 타당한 다섯가지 이유를 개진하고 나서야 비로소 이 오만한 君主는 그들을 封臣으로 대접하는데 동의할 정도였다.

이 시대의 역사에서 여러모로 公法의 기초를 의미하는 평화적인 상호교섭의 막이 오르게 되었다. 상인들은 重視되었는데 孔子의 가장 뛰어난 제자중의 한 사람도 이 상인계층에 속하였다. 각국의 군주들은 이들을 自國에 유치하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였다. 그들의 商品은 通行料와 關稅를 支拂해야 했는데 그 목적은 保護다기 보다는 租稅收入을 올리는 것에 있었다.

知性の 交流는 보다 긴밀한 성격의 관계를 나타내는 것이었다. 학교에는 다른 국가 出身의 學生들이 入學하는 일이 자주 있었으며, 有能한 인재들은 다른 나라의 군주들에게 쉽게

등용되었다. 哲學者들과 정치적 개혁자들은 그들의 후원자를 찾아서 이 궁정에서 저 궁정으로 여행하였다. 孔子自身도 제국의 반 以上을 여행하면서 주요국가들에서 제자들을 끌어 모았다.

1세기후에 히브리의 豫言者의 정신을 가진 孟子는 여러 나라의 首都에서 “국가 번영의 唯一한 기초는 오직 正義와 慈悲뿐이다”는 위대한 복음을 전파하였다.

북서쪽의 新興國家인 秦나라가 제국에서 徐徐히 흥기하여 結局 왕권을 차지하게 된 것도 바로 이와 같은 상호교섭 때문이었는데 秦나라의 통치자들은 隣接國家의 가장 유능한 인재들을 고관과 장군으로 登用하는 정책을 썼던 것이다.

君主들 間의 개인적인 교류도 이 시대의 역사의 현저한 특징이었다. 그들의 빈번한 교류 방편은 일반의 분위기를 충분히 증명하고도 남음이 있는 相互信賴의 정도를 나타내는 것이었다. 물론 다른 나라에서 그러했던 것처럼 신뢰란 것은 때때로 남용된 적도 있지만 이러한 교류도 항상 禮讓과 信義를 바탕으로 하였다. 一例를 들면 姜대국의 군주가 많은 수행원을 거느리고 魯公을 방문하려 왔었는데 당시 司寇였던 孔子는 적절한 예방책을 강구하였고 또 그와 재지있는 대화를 나눔으로써 예상된 위험도 피했을 뿐 아니라 그 군주로 하여금 부당하게 占有했던 영토를 返還하도록 만들었다. 晉公의 魯公 방문은 이러한 諸侯間의 교제를 특징짓는 자유로운 분위기와 친밀성을 예증하는 것으로서 언급될 수 있을 것이다. 주인은 黃河까지 손님과 同行하였다. 손님은 이별석상에서 주인이 冠禮를 —— 귀족의 경우에는 작위수어의식에 해당된다—— 아직 치루지 못하였다는 것을 알자 그 곳에서 그 의식을 거행하자고 제안하였다. 그러나 그 제안이 그런 의식을 거행하는데 필요한 엄숙함이 모자란다는 이유로써 반대에 부딪치자, 衛의 수도가 自國의 수도보다 가까우므로, 魯公은 그곳으로 갈 것을 제의하였다. 그들은 그렇게 하였고, 그 의식을 위해 빌린 祠堂에서 격식에 맞게 화려한 儀式으로 舉行되었다.

同盟條約을 締結하거나 更新하기 위한 君主들 間의 一般的인 會議은 빈번히 開催되었다. 이러한 회의는 이 지상에서 指導的인 나라로서 간주되는 國家들을 모두 다 포괄했기 때문에 비록 거리는 있지만 유럽主權國家들의 대회의와 비유하기에 充分하다. 그러나 다른 곳에서의와 마찬가지로 중국의 여러 國家들 사이에서의 우호적인 交涉의 가장 通常的인 형태는 使節에 의한 것이었다. 使節의 身分은 고귀한 것이었으나 때때로 逮捕되거나 處刑되는 경우도 있었다. 후자의 경우에는 그들이 間諜으로 看做되었기 때문인데, 그들에게 형벌을 가하는 것은 곧 戰爭의 宣言이나 戰爭行爲로 간주되었다. 전자의 경우에는 폭력은 때때로 옹호되기도 하였다. 그 이유는 사절이 通行證을 먼저 발급받기 이전에 그의 領土를 횡단해서 隣接國家에 入國하려고 하였으며 그의 방문은 동시에 敵對的인 목적을 가진 것으로 간주되었기 때문이었다. 일반적으로 사절은 相當한 禮遇를 받았으며, 그 儀典節次는 使臣 본인의 계급이나 主君의 地位에 따라 달랐다. 때때로 일어났던 席次의 문제는 確固한 원칙에

의해서 決定되어 졌지만, 그러한 원칙들은 Vienna 회의에서 행하여 졌던 것처럼 그렇게 간단명료한 것들은 아니었다.

齊나라의 궁정에서 두 나라의 사절들 사이에 이러한 種類의 紛爭이 한번 일어났었다. 한 사람은 자기 나라가 상대방의 나라보다 오랜 歷史를 갖고 있다는 사실에 근거하여 자신의 優先을 주장하였으며, 또 한 사람은 자기 나라가 王室에 더 가깝다는 이유로 우선권을 주장하였다. 다행히 이 문제는 피를 흘리지 않고도 해결되었는데 1815년 이전의 유럽에서는 이런 문제가 반드시 그렇게 해결되지는 않았다. 儀禮의 주재자는 쌍방에게 손님의 배치권 한은 주인에게 있다는 것을 상기시키고 그 王室의 인척에게 우선권을 주었다. 사절에 대한 侮辱이 武力報復을 받는 일도 드물지 않았다. 이러한 일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예는 齊의 군주가 동시에 네 국가의 대표에게 준 모욕이었다. 이 사절들은 거의 동시에 도착하였는데, 그 궁정의 익살꾼이 그들이 모두 외모에 결함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목격하였다. 한 명은 애꾸눈이였고, 한 명은 데머리였고 한 명은 절름발이였으며 한 명은 난장이였다. 齊公은 이 우연한 일치로 악의없는 오락을 만들자는 제의를 받았고, 이에 힌트를 얻어 각 사절에 대한 侍從 또는 안내자를 똑같은 신체적인 결함을 가진 자로 임명하였다. 얇은 막뒤에 숨어있던 宮女들은 연회개시의 의식과 그에 이어지는 宴會를 보다가 난장이, 애꾸눈이, 절름발이, 그리고 데머리가 각기 짝을 지어 나오는 것을 보고 웃음을 터뜨렸다. 사절들은 이 즐거워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이 本意 아니게 戲劇의 주역이 되어버렸음을 알게 되었다. 사절들은 복수를 盟誓하면서 돌아갔고 그 다음해 齊나라의 수도는 네 나라의 연합군에 의해 포위공격을 받게 되었는데, 이들은 뒤늦게나마 그의 경솔함을 뉘우치고 있는 젊은 군주로부터 굴욕적인 양보를 받지 않으면 돌아가지 않겠다고 하였다.

우리는 左傳에서 使節 派遣에 관한 規則을 발견할 수 있는데 이것은 현대국가들의 外交의 慣行과 비견할만 하다. 隣接國家에 파견된 사절은 언급하면서, 左傳의 작자는 이렇게 덧붙였다. “이것은 관례(usage)에 의한 것이며, 새로운 군주가 즉위하면 예외없이 이웃 나라에 사절을 파견하여 그 先任者가 維持하였던 우호적인 관계를 확인하고 확대하려고 하였다.” 사절의 최고의 기능은 조약의 교섭이었다. 근대외교에 알려진 모든 종류의 조약이 고대중국에서도 사용되었다. 엄숙한 형식질차에 따라 調印되고 맹세에 의해서 확약된 그러한 문서들은 盟府라고 불리는 장소에 保管되었는데, 맹세에 의한 확약의 방법으로서는 당사자들이 출잔에 그들의 피를 섞는다는가 희생으로 바쳐진 황소의 머리에 손을 얹기도 하였다.

紀元前 544년에 鄭(Chêng)의 君主와 그의 領土를 侵入한 諸主들의 聯合軍 사이에 締結된 條約의 대강을 實例로 들어 설명해 보자.

前文—當條約의 當事者들은 다음과 같은 事項에 合意한다.

제 1 조—옥수수 輸出은 禁止되지 않는다.

- 제 2 조—一方當事國은 他方當事國에게 不利하게 貿易을 獨占하지 않는다.
- 제 3 조—어느 一方當事國도 他方當事國에 대한 叛逆의 음모를 보호해서는 안된다.
- 제 4 조—裁判으로부터의 逃亡犯은 引渡되어야 한다.
- 제 5 조—飢饉의 경우 相互救助가 提供되어야 한다.
- 제 6 조—叛亂의 경우 相互援助가 提供되어야 한다.
- 제 7 조—締約國은 同一한 友邦과 敵國을 갖는다.
- 제 8 조—우리는 모두 王室을 支持할 것을 誓約한다.

批准宣誓—우리는 上記의 合意內容이 違反되지 않도록 維持할 것을 誓約한다. 山神과 江海神, 先王과 先公의 靈魂, 그리고 우리의 7부족과 12국가의 祖上들이 이의 履行을 감시하소서. 단일 어느 一方이 誠實히 履行하지 않는다면, 全知하신 神께서 그를 懲罰하셔서 모든 國民이 그를 저버리고 그의 生命은 喪失되고 그의 後遜은 斷絶되게 하소서.

孟子는 이와 類似한 條約의 提議를 제시하였는데, 이 경우는 紀元前 651년에 必要한 改革을 實施할 목적으로 齊(Ch'i) 君 少伯(Hsiao Po)이 大諸侯들을 소집한 것이었다. 이 條約은 前者보다 1世紀가 앞선 것이지만 이 두 文書를 比較해 보는 것은 매우 有益하다. 後期の 文書에 의하면 諸侯들이 王室의 支持를 誓約할만큼 王室의 權威가 相當히 弱화되는 反面, 前期의 條約에서는 王權의 權威는 完全히 認定되었는데, 모든 條文이 王의 “勅令”(Ordinance)의 形式을 띠고 있다. 그러한 封臣들에 대한 王의 支配力이 이미 매우 弱화되었다는 事實은 그들이 적어도 天子를 公式적으로 云謂하지 않고는 償罰의 면에서 一定한 主權을 行使하지 않겠다는 規定만 보아도 明白하다. 이 規定은 부분적으로는 良俗을 옹호하고 또 부분적으로는 交涉을 원활히 하며, 公的인 位階秩序의 聲格을 提高하기 위한 것이었다.

- 제 1 조—不孝를 處罰하고 (어떤 나라이건) 後繼者를 變更하지 않으며 妾을 正室로 格上시키지 않는다.
- 제 2 조—德을 崇尚하고 人才를 養成한다.
- 제 3 조—老人을 恭敬하고 어린이에게 慈悲를 베풀고 異邦人을 無視하지 않는다.
- 제 4 조—公職은 世襲되지 않고 兼職은 許容되지 않으며, 適才를 適所에 登用해야 한다. 王에게 보고하지 않고 貴族을 함부로 죽여서는 안된다.
- 제 5 조—水路를 마음대로 變更하지 말고 곡물의 輸送을 妨害하지 않으며, 王과 의논함이 없이 土地를 封土로서 供與해서는 안된다.
- 末文—이 規約의 當事國인 우리 모두는 相互間에 平和를 維持할 것을 合意한다.

“이러한 5가지 規則은 우리 時代의 貴族들에 의해서 公共然히 違反되고 있다”고 孟子는

덧붙였다.

이러한 條約은 宗教儀式으로 批准되는 것 이외에도 通常 感情의인 性格이 덜한 制裁로도 保障되었다. 西洋에서와 마찬가지로 人質이나 다른 物質的인 保障이 擔保로 提供되었다. 때때로 조약은 直接 또는 間接으로 利害關係가 있는 第三國에 의해서도 역시 保障되었는데, 그들은 信義破壞의 處罰을 誓約하였다. 다른 君主의 母親을 人質로 要求한 君主를 例로 들어 보자. 이 境遇는 여러 면에서 教訓的이다. 晉(Ch'in)나라 君主가 齊(Ch'i)나라 君主에게 자기를 主人으로 認定하고 服從의 誓約으로서 그의 母親을 引渡할 것을 要求했을 때 齊나라 君主는 그의 國家는 先王들의 뜻에 의해 他國과 同等하게 創建되었으며 王의 뜻을 경시하는 者는 盟主가 되기에 不適當하다고 對答하였다. 母親을 人質로 要求한다는 것은 끔찍한 提案이기 때문에, 그는 그것에 屈服하느니 차라리 最後의 堡壘에서 對敵하겠다고 對答하였다.

이 순간, 그 事件은 轉換點을 보게 되는데 이는 그 當時의 歷史에 頻繁히 發生한 節次를 例示하는데 도움이 된다. 즉 두 隣接國家의 君主들이 仲裁者로 나서서 보다 덜 抑壓的인 條件으로 妥協시켰다.

보다 진보적인 古代中國의 學者들은 人質交換의 慣行은 準敵對狀態와 相互不信을 지속시키는 傾向이 있다고 非難하였는데 어떤 나라의 學者들도 모든 國際의 去來의 大德은 信義라는 것을 이 보다 강조한 例는 없을 것이다. 孔子는 信義가 없는 사람은 두 바퀴를 連結하는 연결대가 없는 馬車와 같다고 말한다. 國家를 논하면서, 그는 “세가지 根本中에서 가장 重要한 것은 信義이다. 稅入이나 軍隊가 없어도 國家는 여전히 存續할 수는 있으나 信義가 없이는 存在할 수가 없다”고 말한다.

이제는 交戰에 관하여 言及할 次例이다. 敵사이에는 法이 妥當하지 않고 不法이 妥當하다(Inter hostes scripta jura non valere at valere non scripta)라는 原則은 古代 西洋諸國이나 古代中國에서도 모두 잘 理解되고 있었다. 그러나 中國의 戰爭은 最小限 그리스人들과 로마人들의 戰爭보다 더 殘忍하지는 않았다.

詩人 핀다로스(Pindar)의 짐을 남겨두라는 알렉산더의 命令은 어느 程度의 文學的인 教養을 보여주는 것이긴 하나, 反面 被征服者에 대한 掠奪權을 主張하는 道德의 野蠻性을 나타내는 것이다. 中國에서도 사정은 同一한데, “敗者는 悽慘하다”(vae victis)라는 것은 진실로 모든 戰勝談에서 寬大와 慈悲의 찬란한 例와 대조되는 슬픈 語句이다. 違反者를 死刑으로 다스린다면, 한 哲人의 무덤을 가려주는 나무에 敬意를 表할 것을 命令하면서 동시에 敵國君主의 목에 상금을 거는 侵略軍 司令官도 있었다.

모든 軍事指導者들은 이킬레스(Achilles)와 마찬가지로 “法은 나를 위하여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고 宣言하곤 하였다. 그러나 비록 그것이 조직적으로 유린되어지기는 하였으나 平時 뿐만 아니라 戰時에도 法은 存在했다는 사실을 證示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觀

點에서 다음과 같은 事實을 注意해 보자.

첫째, 戰爭遂行過程에서 非戰鬥員의 生命과 財産은 尊重될 것이 要求되었다. 이러한 사실은 人道的인 指導者들에 대한 讚揚과 殘忍한 者에 대한 非難에서 類推할 수 있다. 中國 歷史에서 가장 수월하고 가장 恒久的인 征服을 成就한 者는 언제나 人道主義의 편에 선 者였다.

둘째, 正當한 戰爭에서는 먼저 북을 울리지 않고는 相對方을 공격하지 않는 것이 규칙인데 이것은 상대에게 방어태세를 갖출 시간을 주기 위한 것이다.

다음의 例는 이러한 要求를 넘어선 것이기는 하지만 적의 약점을 이용하는 것을 수치스럽게 생각하는 기사도의 規例를 想起시켜 준다. 宋公은 敵軍이 개울을 건너는 동안 攻擊하는 것을 拒否하고 그들이 戰鬥形態를 갖추기를 기다렸다가 進軍명령을 내렸다. 敗戰하여 참모들의 詰難을 받을 때, 그는 古代의 慣例를 引用함으로써 自身을 正當化하였다. 그는 “眞正한 軍人은 결코 負傷兵을 攻擊하지 않으며 높은 捕虜는 언제나 釋放시킨다. 옛날에는 抵抗하지 않는 敵을 攻擊하는 것은 禁止되었었다. 나는 나라를 잃어버릴뻔 했으나, 먼저 북을 치지 않고 攻擊命을 하는 것을 나는 미움을 것이다”고 말하였다.

그 當時의 指揮官들이 “이 不幸한 군주의 단순함을 嘲笑한”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다.

아징쿠르(Agincourt) 戰鬥後에 프랑스 司令官도 같은 이유로 조소를 받았음이 틀림없다. 그는 英國軍에게 솜브江(the Somme)의 渡江을 許容하였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交戰날짜를 指定해 달라는 請願을 영국왕에게 보내기까지 하였다.

세째, 적어도 그럴듯한 名分까지 없는 戰爭은 해서는 안된다.

사실 이 文句는 「師出有名」 즉 “戰爭을 하기 위해서는 그럴듯한 名分을 갖지 않으면 안된다”고 하는 자주 引用되는 法諺의 翻譯이다. 이것은 情熱과 物慾이 承認된 法의 基準과 合致하는 判斷을 公表하는 輿論에 의해 抑制되었음을 가리킨다.

이에 못지 않게 有名한 또 하나의 法諺에 의하면 名分의 正當性은 物理的인 힘의 열세를 補充해 줄 수 있는 道德的인 힘의 源泉이 된다고 한다.

한 古代 中國人은 “兵士들은 명분이 나쁘면 弱하나 名分이 좋으면 强하다”고 말하였다. 또 한 그가 “논지가 정당한 者는 3중의 무장을 하는 셈이다”고 말한 것은 우리 時代의 詩人들 못지 않게 精神的인 要素에 높은 가치를 부여한 것이었다.

네째, 恒時 正當하다고 認定되는 名分은 勢力均衡의 保存이다.

이 原則은 急迫한 危機에 處해 있는 國家 뿐만 아니라 위험한 상황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는 國家들까지 武力에 呼訴하게 만든다.

公安의 破壞者의 侵略을 止하기 위한 결속은 만할 것도 없이, 紀元前 320년에 秦나라의 야망을 억제하기 위해 6個國이 協調한 일도 있었다. 成功的인 交涉家의 型으로 不朽의 명성을 얻은 한 사람의 20年間에 걸친 努力의 結實인 이 強力한 聯盟은 結局에 가서는 그

目的을 達成하지 못하였다는 것을 덧붙여도 무방하다. 이들 6個國의 共同的 敵國은 그 聯盟의 會員國들을 離間시켜 차례로 하나씩 征服하는데 成功하였다. 宗主國의 王權을 保護하여 온 國家들이 滅亡되자, 征服者는 800年 以上 中國의 君主들에게 封建의인 支配權을 行使해 온 周王室의 최후의 殘滓까지도 쓸어버렸다. 始皇帝라는 稱號를 自稱한 그는 帝國의 封建制度를 廢止하고 동시에 萬里長城의 築城을 完成하였다. 오늘날까지 그의 後繼者들은 皇帝라고 불리우고 있으며 그가 처음으로 實施한 中央集權 政府體制는 萬里長城만큼이나 確固하게 확립되었다.

다섯째, 방금 考察한 革命 以前에는, 生存權은 一般的으로 王室에서 封土를 받은 大國일 수록 神聖視되었다.

이러한 權利는 자주 援用되었는데 특히 效果의이었다. 예를 들면 齊나라의 君主는 強力한 軍隊의 先두에 서서 明白히 敵對的인 意圖를 가지고 魯(Lu)나라로 들어갔다. 魯나라의 大臣인 欒希(Chan Hsi)는 그의 進擊을 沮止할 目的으로 그와 會同하도록 派遣되었다. “魯나라 사람들은 나의 接近에 매우 警戒심을 품고 있는 것 같다”고 齊나라 君主가 말하였다. “사실 국민들은 놀라고 있으나, 우리의 主君은 그렇지 않다”고 大臣은 對答하였다. 侵略者는 “軍隊가 混亂에 빠져 있고 兵器庫는 텅비어 있는데도 君主는 놀라지 않느냐? 공포를 초월하고 있는 듯한 그의 自信心은 어디에서 緣由하는 것인가?”라고 물었다.

大臣은 “主君께서는 그의 祖上이 옛 先王들로부터 받은 下賜物에 依支하고 계신다”고 말하였다. 그리고 나서 그는 계속해서 帝國의 傳統的인 法으로서 承認된 規範下에서 그의 主君의 權利를 擁護하였는데 그것이 說得力이 있어 齊나라 君主는 그의 目的을 拋棄하고 더 以上の 暴力行爲를 하지 않은 채 全수하였다.

이와 類似한 實例가 이미 다른 脈絡에서 引用되었음을 想起할 수 있다. 즉 그것은 어느 君主가 동일한 辯明——王의 下賜物의 神聖性——을 주장했으나 虛事가 된 後에 그러한 原則을 認定하고 支持하기로 決定한 隣接國家의 仲介에 의하여 淪沒 내지 滅亡을 모면한 경우이다.

이런 類의 세번째 實例는 王의 直割領으로 남아 있는 當時 최악한 部分이 存亡의 危機에 處한 경우이다. 楚(Ch'u)莊王은 다른 敵國에 대해 勝利를 거둔 後, 王위를 간탈하려는 明白한 意圖를 가지고 周王室의 領土를 侵入하였다. 武力抵抗을 할 수 없었던 周王은 大臣 王孫滿을 派遣하여 侵略軍에게 食糧을 提供하고 그 指導者의 意中을 타진하도록 하였다. 侵略者는 自己의 目的을 비유적인 언어속에 감추면서 “九鼎의 輕重”을 물었는데, 이것은 만일 그것이 너무 무겁지 않다면 가져가고자 한다고 교묘히 暗示한 것이었다. 大臣은 直接的으로 答辯하기를 피하고, 그 鼎들이 어떻게 最初의 王朝를 세운 大禹에 의해 주조되었는지, 거기에는 전국的 지도가 紋章으로 새겨져 있다는 것, 또 어떻게 15세기 동안 王威의 象徴으로서 保存되어 왔는지 등등에 관한 九鼎의 歷史를 說明하였다. 그리고 그는 여러

國家의 秩序를 위하여 그와 같은 장엄한 힘에 대한 尊敬이 必要하다는 것을 훌륭하게 설명해 보이고 나서 “이것이 모두 事實일진대, 陛下께서는 어찌하여 九鼎의 輕重을 질문하십니까?”라고 말을 끝맺었다.

이와 같은 경우 가장 效果的인 方法과 같이 純全히 歷史的인 論旨의 說得力에 감명을 받은 楚莊王은 그의 邪惡한 目的을 拋棄하고 자기 자신의 領土로 退却하였다.

여섯째, 마지막으로, 中立國의 權利는 認定되었고 어느 程度 重要視되었다. 그리이스의 전쟁에는 中立國이 없었다는 事實은 주목되어 왔다. 中立國이 되기를 願하는 國家들은 紛爭이 發生하였을 때 重要한 곳에 위치한 경우에는 언제나 어느 一方 또는 他方의 편이라는 사실을 宣稱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그런데 中國의 경우는 이와 달랐다. 中立國은 빈번히 提議를 拒絶하였고, 中立國의 領土는 交戰國 사이에 效果的인 緩衝地帶의 역할을 하였다. 紛爭에는 더이상 介入하지 않고 軍隊의 通過만을 許容한 사례도 많았는데, 어떤 현명한 政治家가 그의 君主에게 그와 같은 경솔한 양보를 하는 것은 危險하다고 警告한 경우도 있었다. 그는 “以前의 戰爭에서 陛下께서는 軍隊의 通過를 許可한 결과 피해를 입으셨습니까. 만일 陛下께서 다시 한번 그렇게 하신다면 破滅을 自招하실 것입니다”라고 말하였다. 그의 君主는 그 경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리하여 不當하게 호의를 입은 君主가 敵國을 무찌른 後에 方向을 틀려 그 親舊의 領土마저 併呑하여 버렸다.

結 語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古代中國에 國際關係에 관한 書籍들이 存在했었다는 것은 可能한 일이다. 그러나 이 문제에 관한 그리이스인의 저술이 단지 名稱만 남아 있는 것처럼 그 書籍들도 현재 전하는 것이 없다. 이러한 推測이 充分한 根據가 있건 없건간에 既述한 바와 같이 古代中國의 國家들은 平時 및 戰時에 承認되고 있는 다소간 發達된 成文法과 不文法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立證할 만한 事實은 많이 남아 있다. 當時의 禮書와 史書들이 이를 證明한다.

이러한 歷史書中の 하나는 그 자체가 一種의 國際法規의 일부로 認定되는데, 즉 孔子가 2世紀半 以上の 역사를 편찬한 春秋가 바로 그것이다. 이 책속에 종종 단 한 字로 表現되어 있는 讚揚과 非難은 어떤 抗訴도 할 수 없는 判決로서 受諾되었으며, 또 陸海軍보다 더욱 強力한 抑制力을 行使하였다고 중국학자들은 확언한다.

中國의 政治家들은 그 當時의 中國과 근대유럽의 政治的 分裂相이 類似함을 指摘하여 왔다. 그들은 중국의 고대 記錄에서 近代國際法の 用語에 相當하는 慣例, 文句 및 思想을 發見하였으며, 그 事實에 依據해서 더욱 더 基督教世界의 國際法規를 受容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國際法規가 언젠가는 地上의 모든 國家間에 正義와 平和를 連結하는 紐帶가 될 것이라고 믿는 것은 결코 尤토펴아적인 환상은 아닌 것이다.